

#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13호
----------	--------

○ 제안자 : 장성군수  
○ 제출일자 : 2025. 5.



## 1. 개정이유

-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노인회 지원(안 제11조)
  -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인회 지원 범위 확대 및 구체화
- 경로식당 등 설치·운영(안 제22조)
  - “경로식당 무료급식” 을 “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” 으로 확대
- 노인의 날 등 행사(안 제23조)
  - 「노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라 “노인의 날” 을 “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” 으로 확대
- 통합돌봄 사업(안 제24조)
  - 주거환경 개선, 보건·의료서비스 제공, 요양·돌봄생활 유지, 동행서비스 제공 등 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지원 관련 내용 추가

## 3. 관련법령

-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활동), 제4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), 제5조(비용의 보조 등)
- 「노인복지법」 제6조(노인의 날 등)

## 4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입법예고 : 2025. 4. 3. ~ 4. 22. (20일간) / 의견없음

## 6. 사전협의사항

- 규제심사 : 2025. 4. 3. 법무통계팀 협의결과 이견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2025. 4. 9. 감사팀 협의결과 이견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2025. 4. 17. 여성다문화팀 협의결과 이견없음

## 7. 조례안 : 붙임

##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군수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를 “군수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문화·예술·체육”을 “노인의 날 및 노인관련 문화·예술·체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”로, “대부하거나 시설을 지원할”을 “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”로 한다.

1. 노인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
2.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, 노인교육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
8.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
제22조의 제목 “(경로식당 설치·운영)”을 “(경로식당 등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경로식당을”을 “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사업 추진에 관해 직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로식당”을 “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경로식당”을 “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”으로, “주·부식비”를 “비용”으로, “지원”을 “예산 범위에서 지원”으로 한다.

③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노인에”를 “법 제6조에 따라 경로의 달, 노인의 날, 어버이날 등 노인에”로, “위해 법에 정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위안잔치 등”을 “위한”으로, “수립·시행”을 “수립·시행하거나,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,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통합돌봄 사업)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
2.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·의료 서비스
3. 건강한 재가생활을 위한 요양·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
4. 의료기관·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
5. 병원 및 이용시설 등 동행 서비스 지원

6.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물품 지원
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4조 앞의 “제6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보칙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노인회 지원) ① <u>군수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1조(노인회 지원) ① <u>군수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5조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1. 노인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</p> <p>2.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, 노인 교육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6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)</p> <p>7. 노인의 날 및 노인관련 문화 · 예술 · 체육 ---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문화 · 예술 · 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6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8.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</p> <p>③ ----- 경우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</p>
<p>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인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시설</p>	

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경로식당 설치 · 운영) ①

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식당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,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③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·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사용되는 주 · 부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에 따라 ---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· 수익하게 할 ---.

제22조(경로식당 등 설치 · 운영)

① -----

-----

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사업 추진에 관해 직접 ---.

②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

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---

-----

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

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---

-----

----- 비용 -----

----- 예산 범위에서

지원 -----

제23조(노인의 날 등 행사)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에 정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위안잔치 등 노인 관련 행사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.  
제23조(노인의 날 등 행사) ① --

--- 법 제6조에 따라 경로의 달, 노인의 날, 어버이날 등 노인에 ----- 위한 -----

-- 수립·시행하거나,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--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(통합돌봄 사업)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
2.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·의료 서비스
3. 건강한 재가생활을 위한 요양·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
4. 의료기관·사회복지시설에서

지역사회로의 복귀

5. 병원 및 이용시설 등 동행 서

비스 지원

6. 홀로사는 노인 등에 대한 물

품 지원
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업

제6장 보칙

<삭 제>

<신 설>

제24조 · 제25조 (생 략)

제6장 보칙

제25조 · 제26조 (현행 제24조 및  
제25조와 같음)

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 
(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)

## 2. 미첨부 사유

- 「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관련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3. 작성자 :

가족행복과장

박 미희 (서명 인)